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3월13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배효원)

제안이유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('2002. 1. 26.) 및 동법시행령('2002. 10. 14.)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도시교통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함.
(안 제1조 내지 제6조)

- 교통량감축프로그램중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이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요금의 70%이상을 공영노외주차장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용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정함.(안 제2조제2항제4호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?</p>	<p>○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임.</p>
<p>○ 동 조례개정으로 인해 시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는가?</p>	<p>○ 없을 것임.</p>
<p>○ 교통량 감축을 위해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의 70%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중 3급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인가?</p>	<p>○ 예</p>
<p>○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얼마 만큼의 감축을 예상하는가?</p>	<p>○ 아직 수치화 해보지는 않았음.</p>
<p>○ 감축효과를 계량화 하기 바람.</p>	<p>○ 예</p>
<p>○ 동 조례개정시 해당되는 상업용 건물은 어디인가?</p>	<p>○ 송내북부역에 위치한 구 씨마건물 한곳 임.</p>
<p>○ 조례개정시 씨마건물은 부담을 바로 경감 해주는 것인가?</p>	<p>○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여 바로 경감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점검등을 통해 경감하는 것임.</p>
<p>○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의 변동은?</p>	<p>○ 경감비율은 20%이며, 현행규정과 변경은 없음.</p>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3. 8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의안번호	제105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□ 제안이유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(2002. 1. 26) 및 동법시행령(2002. 10. 14)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.(안 제1조 내지 제6조)
- 교통량감축프로그램중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이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에 규정에 의한 주차장요금의 70%이상을 공영노외주차장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정함.(안 제2조제2항제4호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2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4조, 제35조제2항, 제38조제4항, 제5항 및 제42조”를 “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호와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제1항제18호·제24조제2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“제21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시설물 종사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”를 “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”로 하고, 동조제2항제1호중 “제33조제6항”을 “제16조”로 하며, 동조동항제4호중 “부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요금의 70%”를 “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중 3급지”로 한다.

제3조제목중 “감면”을 “면제”로 하고, 동조중 “제34조제1항제17호”를 “제17조제18호”로 하며, “감면대상시설물”을 “면제대상시설물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영 제35조제2항, 제38조제4항 및 제5항”을 “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8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제38조제5항”을 “제24조제4항”으로 한다

제6조제1항중 “제38조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24조제2항 및 제4항”으로 하고, “영 제35조”를 “법 제19조”로 하며, 동조제3항중 “제38조제4항”을 “제2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1의 주차장유료화란의 이행기준란중 “부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주차장요금의 100분의70이상”을 “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중 3급지이상 주차요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4조, 제35조제2항, 제38조제4항, 제5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호와 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제1항18호·제24조제2항 및 제4항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 (정의) ① (생략) 1. “부담금”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. 2. 및 3. (생략) ② “교통량감축프로그램”이라 함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</p>	<p>제2조 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제18조----- ----- 2. 및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. 1. ----- -----(-제16조----- -----) ----- 2. 및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의 주차장중 3급지----- ----- 5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“승용차 10부제”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련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(영 제33조제6항에서 규정한 연결대지를 포함한다.이하 같다)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·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. 2. 및 3. (생략) 4. “주차장 유료화”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 요금의 70%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. 5. ~ 9. (생략)</p>	<p>1. ----- ----- -----(-제16조----- -----) ----- 2. 및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의 주차장중 3급지----- ----- 5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부담금의 감면) 영 제34조제1항제 17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및 2. (생략)</p>	<p>제3조 (부담금의 면제) 영 제17조제18호- ----- 면제대상시설물은 ----- -----.</p> <p>1. 및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 (단위부담금의 조정 등) 영 제35조 제2항,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4조 (단위부담금의 조정 등) 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18조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(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)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(이하 “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”이라 한다)은 각종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 (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) ①--제24조제4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) ①영 제 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영 제38조제4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.</p> <p>④ 및 ⑤ (생략)</p>	<p>제6조 (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) ①영 제 24조제2항 및 제4항----- -----법 제19조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제24조제2항----- -----.</p> <p>④ 및 ⑤ (현행과 같음)</p>

